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10
------------	------

2025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8일, 이민석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가 추가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이민석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10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가 추가되고 교육감이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합성물의 유포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반포가 사이버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복제·확산되며, 완전한 회수 또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사이버 따돌림이나 단순한 모욕·비방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기며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학업 지속이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표-1] 3년간 서울시 관내 학교급별 딥페이크 신고 현황¹⁾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초	5	0	1(1명)
중	3	14	32(53명)
고	2	8	50(93명)
합계	10	22	83(147명)

※ 피해학생 수 집계는 2024년부터 실시하여 2023년 이전의 피해현황은 건수만 기재함.

○ 그러나 영상물 등 삭제지원은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²⁾ 등에서 수행되고 있어, 실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현장 기관인 학교 또는 교육청과 신속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대응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국회는 2025년 1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2025. 8. 1.

1)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737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5434, 2025. 4. 8.)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속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개정으로 법적 근거 신설.[시행일: 2025. 4. 17.]

시행)하여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시적으로 포함³⁾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추가 개정(2025. 9. 19. 시행)하였습니다⁴⁾.

- 이는 관련 법률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⁵⁾에서 규정한 것을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즉각적인 영상물 삭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두 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에 따른 입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일: 2025. 8. 1.]

4)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5)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 기존에는 국가만 삭제지원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근거 신설 [2025. 4. 17. 시행]

○ 다만, 동 조례와 규율 범위가 겹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확산 사례를 계기로 2021년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023년 제정된 것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과 인식개선 등 교육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처럼 두 조례는 당초 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구제 부분이 강화되면서 조례 적용 범위 간 중첩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유사한 개념이 별도로 규율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입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두 조례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법적 정합성을 이루는 개정으로서, 상위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정의를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조례 적용 시 혼란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명확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이 기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삭제 후 변경 조문으로 대체하고 있는바 조례상 사이버폭력의 해석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대체하여 “사이버폭력”으로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 중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정사항 외의 부분 중 “사이버 따돌림”은 현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되었던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가 2024년 3월 법 개정시 “사이버폭력”이라는 포괄 개념에 통합되어 삭제되었으나,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아 법령과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자치법규에 별도로 반복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원칙⁶⁾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법규에 실익 없는 정의를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와의 불일치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동 조문은 정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준용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표-2]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조례안과의 비교

현행 조례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u>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u>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u>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3]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 규정 변화

학교폭력예방법		
2021.3.23. 시행	2024.3.1. 시행	2025.8.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법제처 2015. 6. 16. 회신 15-0136 의견제시 사례)

학교폭력예방법		
2021.3.23. 시행	2024.3.1. 시행	2025.8.1. 시행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 따돌림</u>,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폭력</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u>따돌림과</u>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폭력</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u>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u>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검토(안 제6조제3항)

- 안 제6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교육감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개정 취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25. 9. 1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 대상 범위와 권한이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여 사이버폭력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이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 피해학생의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에서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범죄증거를 보존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칙에 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은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며, 이 조항에서 교육감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 명시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2항은 삭제지원의 요청 주체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 조례만으로 교육감의 삭제지원 요청 권한을 규정할 경우 상위 법

률과의 충돌로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입법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4제3항의 시행일과 동일한 2025년 9월 19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⁷⁾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 부칙 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10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아 법률과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중 “사이버 따돌림”을 법률상의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이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는바,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에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 부칙 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
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한다.

부칙 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u>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사이버 따돌림, <u>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u> ----- ----- -----.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 <u>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u> -----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3. ~ 5. (생략)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 부칙 이 조례는 <u> 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 <u>2025년 9월 19일</u>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u>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u>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5. (생략) 제6조(사업 및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u>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u>

현행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부칙 ----- 2025년 9월 19일-----.